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이연희·한민수·허종식

이정문 • 정성호 • 문진석

김남희 • 서영석 • 허 영

최민희 · 김정호 · 이병진

서미화 · 문금주 · 민형배

박수현・박 정・민홍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u>「산업</u>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u>①</u> 중
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벤처기업부장관
<u>한국디자인진흥원은</u> 여성기업	
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u>위</u>	위한 지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사업등을 실시 할 수 있다.
<u> <신 설></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산업디
	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
	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
	<u>다.</u>